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유인촌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,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「관광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739호, 2025. 1. 31. 공포, 2025. 8. 1. 시행)됨에 따라, 이 영의 이용자 부담금,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관광지등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방법 및 절차, 징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를 삭제한다.

제54조를 삭제한다.

제55조제1항 중 “법 제64조제3항”을 “제64조”로 한다.

제56조의 제목 “(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)”을 “(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)”으로, 같은 조 본문 중 “이용자 분담금,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분담금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“분담금등”을 “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”으로,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“분담금등”을 “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”으로,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“분담금등”을 “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”으로,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“분담금등”을 “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53조(이용자 부담금)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시설의 건설사업명 · 건설비용 · 부담금액 ·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건설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.</u> <u>1. 공사비(조사측량비 ·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)</u> <u>2. 보상비(감정비를 포함한다)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액은 지원시설의 이용자의 수 및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용자와 협의하여 산정한다.</u>	<u><삭 제></u>
<u>제54조(원인자 부담금) 사업시행자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금에 관한 제53조를 준용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현행	개정안
제55조(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) ① 사업시행자는 <u>법 제64조 제3항</u> 에 따라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을 분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의 유지·관리·보수 현황, 분담금액, 납부방법, 납부기한 및 산출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.	제55조(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) ① ----- <u>법 제64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③ (생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
제56조(<u>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위탁</u>) 사업시행자는 <u>법 제65조제1항</u> 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<u>법 제64조에 따른 이용자 분담금, 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분담금등”이라 한다)</u> 의 징수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	제56조(<u>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</u>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분담금등</u> 의 납부의무자의 성명·주소	1. <u>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</u> 의 납부의무자의 성명·주소
2. <u>분담금등</u> 의 금액	2. <u>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</u> 의 금

현행	개정안
3. <u>분담금등</u>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. 그 밖에 <u>분담금등</u>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	액 3. <u>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</u>의 납부사유 및 납부기간 4. 그 밖에 <u>유지·관리 및 보수 비용</u>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92